

# 11

CHAPTER

## CPTPP 체결 시 농식품 분야 영향 분석

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<b>I. 배경 및 현황</b>  | <b>327</b> |
| 1. 협정 개요           | 327        |
| 2. 추진 경과           | 329        |
| 3. 농식품 교역현황        | 331        |
| <b>II. 주요내용 분석</b> | <b>333</b> |
| 1. 시장 개방           | 333        |
| 2. 원산지규정           | 335        |
| 3. 동식물 검역(SPS)     | 337        |
| 4. 무역기술장벽(TBT)     | 340        |
| <b>III. 시사점</b>    | <b>342</b> |



## 11

## CPTPP 체결 시 농식품 분야 영향 분석

## 1. 배경 및 현황

- CPTPP는 환태평양 11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, 환태평양 국가 간 경제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출범

\* 2021년 9월, 중국과 대만이 공식적으로 가입을 신청한 바 있으며, 우리나라 역시 가입 결정이 임박한 시점(2021.10.29. 기준)

## 2. 주요 내용 분석

- 기체결 FTA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이 예상
  - \* 회원국의 농식품 관세 철폐율(품목 수 기준) 평균 96.3%로 매우 높음
  - \* 가입 시 회원국의 승인이 필요한 구조로, ①회원국과 동등한 수준의 시장개방 ②민감품목(기체결 FTA 양허 제외 품목) 시장개방 요구가 우려
- 원산지 누적기준 도입으로 가공무역 활성화 기대
  - \* 역내산 원재료 활용 제품에 특혜 관세가 적용되므로, 역내산 중간재·원재료 활용 가공무역이 활성화될 전망
- 구획화<sup>155)</sup> 인정, 수입국 의무 강화로 회원국간 SPS조치 완화 예상
  - \* 전염병 미발생 지역(농장)의 신선 농축산물 수입을 금지할 수 없게 되어 우리측 시장개방이 예상, 수입 거부 시 과학적 근거 제시가 요구
- TBT 관련 적합성, 투명성의 의무가 강화되었으며, 일부 품목에 대한 개별 부속서가 발행되어 무역기술장벽 완화 예상
  - \* ①와인과 증류주 ②포장식품 및 식품첨가물 관련 개별 부속서가 발행, 회원국에 명확한 공통 기준이 제시됨에 따라 무역기술장벽 완화 예상

## 3. 시사점

- 시장개방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①품목별 민감도를 고려한 양허유형 선택 ②민감품목 방어를 위한 협상 전략 수립 요구
- 검역규정에 대응하기 위한 검역 전문인력, 설비의 보충 필요

155) 동식물 전염병으로 인한 수입 제한의 범위를 '국가'에서 '구획(최소농장단위)'로 완화하는 것

01

02

03

04

05

06

07

08

09

10

11



## I 배경 및 현황

### 1. 협정 개요

- CPTPP(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-Pacific Partnership, 포괄적·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)는 환태평양 11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
  - 2015년 미국을 포함한 12개국 간 타결되었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(TPP)에서 유래, 미국 탈퇴(2017.01.) 이후 일본 주도로 CPTPP가 타결(2018.01.)
    - 2015년 당시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확장 중이었던 중국을 견제하고, 환태평양 국가 간 경제 협력의 강화를 목적으로 출범하였음
  - 2020년 기준 CPTPP의 무역규모는 5조 2,808억 달러(한화 약 6,163조 원)로, 전 세계 교역의 15.2%에 달함<sup>156)</sup>
    - CPTPP 협정국 11개국은 일본, 싱가포르, 브루나이, 베트남, 말레이시아, 호주, 뉴질랜드, 캐나다, 멕시코, 칠레, 페루
    - GDP 규모는 10조 6,883억 달러(한화 약 12,461조 원)로 전 세계 GDP의 12.6% 차지('20)<sup>157)</sup>
    - 회원국 총인구수는 5억 1,488만 4,805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6.5% 수준('21)<sup>158)</sup>

〈그림 I-1〉 주요 무역협정 및 CPTPP 회원국 현황(2021)

| RCEP(15)  |     |       |      |       | CPTPP(11) |  |
|-----------|-----|-------|------|-------|-----------|--|
|           | 한국  | 중국    | 일본   |       | 캐나다       |  |
| 캄보디아      | 라오스 | 미얀마   | 싱가포르 | 브루나이  | 멕시코       |  |
| 태국        | 필리핀 | 인도네시아 | 베트남  | 말레이시아 | 칠레        |  |
| ASEAN(10) |     |       | 호주   | 뉴질랜드  | 페루        |  |

156) ITC Trademap, 2020년 상품의 총수출과 총수입액의 합계로 집계 (검색일 2021.10.26.)

157) World Bank Data, GDP(current US\$), 2020 (검색일 2021.10.26.)

158) World Bank Data, Population, total, 2021 (검색일 2021.10.26.)

- 기타 양자 간 무역협정(FTA)과는 다르게 다자간 합의된 자유무역협정이며, 2020년 11월 체결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RCEP(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) 대비 관세양허율이 높고 조항이 세분화된 것이 특징
  - CPTPP의 경우 양허율이 최소 95.0%로 RCEP(국가별로 91.9%~94.5%) 대비 더 관세 양허 수준이 더 높음
  - 또한, CPTPP는 RCEP 협정문에서 규정하지 않는 국영기업, 노동, 환경, 개발, 규제조화, 투명성 관련 조항을 보유하며, RCEP 대비 더 세부적인 조항을 통해 협정국간 구체적인 협력의 의무를 명시

〈표 I-1〉 CPTPP와 RCEP 협정 관세양허율 및 주요내용 비교표

| 구분    | CPTPP   | RCEP   |
|-------|---|--|
| 관세양허율 | 95.0% ~ 100.0%  | 91.9% ~ 94.5%  |
| 주요내용  | 1장 최초 조항 및 일반정의<br>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<br>3장 원산지 및 원산지 절차<br>4장 섬유 및 의류<br>5장 관세행정 및 무역촉진<br>6장 무역구제<br>7장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(SPS)<br>8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(TBT)<br>9장 투자<br>10장 국경 간 서비스 무역<br>11장 금융서비스<br>12장 기업인의 일시귀국<br>13장 통신<br>14장 전자상거래<br>15장 정부조달<br>16장 경쟁정책<br>17장 국영기업 및 지정된 독점<br>18장 지식재산권<br>19장 노동<br>20장 환경<br>21장 협력 및 역량 강화<br>22장 경쟁력 및 비즈니스 촉진<br>23장 개발<br>24장 중소기업<br>25장 규제 일관성<br>26장 투명성 및 반부패<br>27장 행정 및 제도조항<br>28장 분쟁해결<br>29장 예외 및 일반조항<br>30장 최종조항 | 1장 최초규정 및 일반 정의<br>2장 상품무역<br>3장 원산지규정<br>4장 통관절차 및 무역 원활화<br>5장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(SPS)<br>6장 표준,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<br>7장 무역구제<br>8장 서비스무역<br>9장 자연인의 일시 이동<br>10장 투자<br>11장 지식재산권<br>12장 전자상거래<br>13장 경쟁<br>14장 중소기업<br>15장 경제 및 기술협력<br>16장 정부조달<br>17장 일반규정 및 예외<br>18장 제도 규정<br>19장 분쟁해결<br>20장 최종조항 |

\*출처: 김희중(2021), 뉴질랜드 외교통상부(www.mfat.govt.nz), 산업통상자원부 RCEP 협정문(www.fta.go.kr/rcep/doc/1)

- CPTPP는 전자상거래, 통신, 서비스, 환경, 노동기준, 무역기술장벽(TBT)을 비롯한 현대 무역 이슈를 반영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의의를 보유

- CPTPP는 총 30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으며, 농식품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①원산지규정 ②동식물검역 ③무역기술장벽 등

|        |   |
|--------|---|
| 원산지규정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3장 원산지 및 원산지 절차</li> <li>- 동식물 유래 상품의 완전생산 인정 범위 확대</li> </ul>   |
| 동식물검역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7장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(SPS)</li> <li>-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투명하고 비차별적으로 운영</li> <li>- 위생 검역 분야에서 '구획화(최저 농장 단위)' 인정</li> </ul> |
| 무역기술장벽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8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(TBT)</li> <li>- 외인·증류주, 포장식품 및 식품첨가물, 유기농 제품 관련 별도의 부속서 공시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\*출처: 뉴질랜드 외교통상부(www.mfat.govt.nz) > CPTPP 협정문(원문)

## 2. 추진 경과

- CPTPP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(TPP)에서 유래, 2017년 미국의 TPP 탈퇴 이후 2018년 CPTPP가 공식 타결
  - 2015년 10월, 미국을 포함한 12개국 간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(TPP)이 타결
    - TPP는 미국과 일본 주도로 출범한 환태평양 경제협력체로, 아시아에서 RCEP, AIIB 등을 통해 영향력을 확장 중인 중국을 견제하고자 함
    - 당시 회원국은 미국을 포함한 12개국(캐나다, 멕시코, 칠레, 페루, 일본, 싱가포르, 브루나이, 베트남, 말레이시아, 호주, 뉴질랜드)으로 구성
  - 2017년 1월, 美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함께 미국은 보호무역주의로 전환, TPP 탈퇴를 발표
  - 미국 탈퇴 이후, 11개 회원국은 논의를 통해 TPP의 중요성을 재확인, 협정을 유지하기로 결정(2017.03.)

01

02

03

04

05

06

07

08

09

10

11

- 2017년 11월, 회원국은 협정의 명칭을 CPTPP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에 동의
- 2018년 12월, 6개국(일본, 캐나다, 호주, 멕시코, 뉴질랜드, 싱가포르)에서 CPTPP가 발효, 2019년 1월 베트남에서도 CPTPP가 발효

□ 2020년 美 바이든 대통령 당선으로 미국의 CPTPP 복귀 여부에 귀추가 주목, 2021년 9월 중국과 대만이 공식 가입 신청

-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CPTPP에 복귀할 가능성이 존재하며<sup>159)</sup>, 중국이 이에 대비하여 CPTPP 가입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보임
- 2020년 11월,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은 CPTPP 가입 의사를 내비쳤으며 이듬해인 2021년 9월, CPTPP 가입을 공식 신청함
- 2021년 9월 22일, 중국의 공식 가입 신청(2021.09.16.)으로부터 6일 후 대만이 CPTPP 가입을 공식적으로 신청

〈표 I-2〉 CPTPP 추진 경과

| 일시       | 추진내용  |
|----------|---|
| 2015.10. | ·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(TPP) 타결                     |
| 2016.02. | ·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(TPP) 서명                     |
| 2017.01. | · 美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, 미국 TPP 탈퇴               |
| 2017.03. | ·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(TPP) 유지 합의                  |
| 2017.11. | · 포괄적·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(CPTPP) 추진 합의        |
| 2018.01. | · 포괄적·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(CPTPP) 타결           |
| 2018.03. | · 포괄적·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(CPTPP) 협정 서명        |
| 2018.12. | · 포괄적·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(CPTPP) 발효(6개국)      |
| 2019.01. | · 베트남에서 CPTPP 발효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020.11. | · 中 시진핑 국가주석, APEC 정상회의에서 중국 CPTPP 가입 의사 표명 |
| 2021.09. | · 중국 CPTPP 가입 공식 신청(2021.09.16.)            |
| 2021.09. | · 대만 CPTPP 가입 공식 신청(2021.09.22.)            |

159) KDI 한국개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,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CPTPP에 복귀할 가능성이 존재

### 3. 농식품 교역현황

□ 2020년 대한민국의 對CPTPP 수출액은 18억 8,832만 달러(한화 약 2조 2,112억 원)로 총수출의 32.9% 차지

- CPTPP 회원국 중 우리 농식품 주요 수출국은 일본(15.7%), 베트남(6.6%), 호주(2.7%) 등<sup>160)</sup>
- 주요 수출품목은 조제품 기타(10.0%), 라면(7.7%), 김치(4.6%) 등이며 이 외에도 단고추, 설탕과자류 등이 수출<sup>161)</sup>

〈표 I-3〉 우리나라 對CPTPP 회원국 농식품 수출현황(2020)

(단위: 천 달러, %)

| 국가        | FTA 여부 | 수출액       | 비중      | 주요 수출품목(상위 5개 품목)   |   |
|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---|---|
| 전 세계      | -      | 5,738,462 | 100.0   | · 라면(10.5%), 조제품 기타(7.5%), 기타 비알코올 음료(4.6%), 소스 및 소스용 조제품(2.9%), 김치(2.5%) |   |
| CPTPP 회원국 | -      | 1,888,316 | 32.9    | · 조제품 기타(10.0%), 라면(7.7%), 김치(4.6%), 단고추(4.6%), 설탕과자류(3.6%)               |   |
| 1         | 일본     | ×         | 901,256 | 15.7  | · 조제품 기타(10.9%), 단고추(9.6%), 김치(7.9%), 설탕과자류(7.5%), 라면(6.1%)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         | 베트남    | 양자        | 380,589 | 6.6   | · 냉동 미절단 닭고기(9.4%), 조제품 기타(9.2%), 기타 비알코올 음료(8.3%), 과당시럽(5.1%), 조제분유(4.9%)            |
| 3         | 호주     | 양자        | 154,555 | 2.7   | · 라면(13.8%), 조제품 기타(8.1%), 커피엑스 에센스와 농축물(7.4%), 베이커리 제품(6.3%), 기타 비알코올 음료(4.1%)       |
| 4         | 싱가포르   | 양자        | 143,624 | 2.5   | · 조제품 기타(14.6%), 신선 초본류 딸기(9.8%), 라면(6.5%), 자당(5.0%), 프로필렌글리콜(4.4%)                   |
| 5         | 말레이시아  | 다자        | 117,730 | 2.1   | · 라면(16.3%), 조제품 기타(14.7%), 옥수수전분(6.8%), 커피엑스 에센스와 농축물(4.2%), 비스킷·쿠키 및 크래커(3.2%)      |
| 6         | 캐나다    | 양자        | 115,841 | 2.0   | · 라면(11.7%), 커피엑스 에센스와 농축물(9.9%), 코코아 함유 아이스크림(5.7%), 기타 비알코올 음료(4.2%), 베이커리 제품(3.9%) |
| 7         | 뉴질랜드   | 양자        | 33,184  | 0.6   | · 라면(14.9%), 젤라틴(12.7%), 기타 비알코올 음료(5.8%), 베이커리 제품(5.8%), 전화당과 기타 당류와 당시럽 혼합물(5.1%)   |
| 8         | 멕시코    | ×         | 21,264  | 0.4   | · 팜유와 분획물(15.2%), 사카린의 염(13.7%), 라면(12.6%), 기타 효소(11.8%), 스테비오사이드(10.8%)              |
| 9         | 칠레     | 양자        | 14,537  | 0.3   | · 커피엑스 에센스와 농축물(39.9%), 기타 비알코올 음료(16.9%), 프로필렌글리콜(8.1%), 아미노산(6.8%), 라면(4.2%)        |
| 10        | 페루     | 양자        | 3,861   | 0.1   | · 프로필렌글리콜(22.7%), 라면(13.6%), 기타 효소(9.4%), 아미노산(9.2%), 조제품 기타(9.1%)                    |
| 11        | 브루나이   | 다자        | 1,880   | 0.0   | · 라면(45.5%), 기타 비알코올 음료(20.9%), 소스 및 소스용 조제품(7.3%), 비스킷·쿠키 및 크래커(5.5%), 베이커리 제품(3.3%) |

\*주: 비식품과 수산물을 제외(농산물, 축산물, 임산물의 합계로 수출규모를 집계)

\*출처: KATI 농식품수출정보(www.kati.net)

160) 우리 농식품 전체 수출액에서 해당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집계

161) 對CPTPP 회원국 농식품 수출액에서 해당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집계

□ 동년 우리나라 對CPTPP 농식품 수입액은 50억 8,665만 달러(한화 약 5조 9,666억 원)로 총수입의 23.7%에 해당

- CPTPP 회원국 중 한국의 주요 농식품 수입국은 호주(10.6%), 뉴질랜드(2.8%), 캐나다(2.3%) 등<sup>162)</sup>
- 주요 수입품목은 냉동 쇠고기(11.6%), 메슬린 외 기타 곡분(6.6%), 냉장 쇠고기(6.5%) 등이며 이 외에도 기타 사탕수수당, 기타 조제품 등이 수입<sup>163)</sup>

〈표 I-4〉 우리나라 對CPTPP 회원국 농식품 수입현황(2020)

(단위: 천 달러, %)

| 국가        | FTA 여부 | 수입액        | 비중        | 주요 수입품목(상위 5개 품목)  |   |
|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--|---|
| 전 세계      | -      | 21,464,331 | 100.0     | · 조제품 기타(7.7%), 냉동 뼈 없는 쇠고기(5.2%), 냉장 뼈 없는 쇠고기(4.2%), 냉동 갈비 쇠고기(3.7%), 냉동 돼지고기(3.5%)     |   |
| 소계(CPTPP) | -      | 5,086,649  | 23.7      | · 냉동 뼈 없는 쇠고기(11.6%), 메슬린 외 기타 곡분(6.6%), 냉장 뼈 없는 쇠고기(6.5%), 기타 사탕수수당(6.0%), 조제품 기타(4.8%) |   |
| 1         | 호주     | 양자         | 2,276,278 | 10.6   | · 냉동 뼈 없는 쇠고기(23.2%), 냉장 뼈 없는 쇠고기(14.4%), 기타 사탕수수당(13.4%), 메슬린 외 기타 곡분(12.3%), 냉동 갈비 쇠고기(5.7%)  |
| 2         | 뉴질랜드   | 양자         | 590,638   | 2.8  | · 신선 키위(19.0%), 치즈(9.7%), 버터 조제품(8.2%), 기타 조제품(7.0%), 냉동 갈비 쇠고기(5.9%)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         | 캐나다    | 양자         | 491,548   | 2.3  | · 조제품 기타(19.1%), 저에크루산 유채유와 그 분획물(18.9%), 냉동 돼지고기(13.4%), 메슬린 외 기타 곡분(10.8%), 냉장 삼겹살 돼지고기(7.2%) |
| 4         | 베트남    | 양자         | 474,543   | 2.2  | · 견과류 조제품(11.7%), 메현미(11.1%), 커피(9.9%), 캐슈넛шел액(9.1%), 매니옥 칩(6.6%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5         | 칠레     | 양자         | 360,139   | 1.7  | · 냉동 삼겹살 돼지고기(21.1%), 신선 포도(20.6%), 붉은 포도주(13.8%), 냉동 돼지고기(8.7%), 신선 버찌(8.2%)                   |
| 6         | 말레이시아  | 다자         | 256,016   | 1.2  | · 베이커리 제품(21.2%), 팜 스테아린(16.9%), 팜 올레인(15.0%), 조제품 기타(4.1%), 기타 초콜릿과 초콜릿 과자(3.2%)               |
| 7         | 일본     | 다자         | 246,066   | 1.1  | · 조제품 기타(11.5%), 소스 및 소스용 조제품(9.4%), 식품공업용 방향성 물질(7.7%), 인스턴트 카레(4.6%), 청주(4.2%)                |
| 8         | 싱가포르   | 양자         | 136,922   | 0.6  | · 콜라베이스(20.2%), 조제품 기타(10.0%), 식품공업용 방향성 물질(9.9%), 코코아 조제품(8.7%), 초콜릿과 초콜릿 과자(6.6%)             |
| 9         | 페루     | 양자         | 129,451   | 0.6  | · 커피(18.5%), 신선 포도(17.2%), 신선 망고(14.7%), 기타 냉동 과일과 견과류(13.2%), 브라질넛(10.0%)                      |
| 10        | 멕시코    | ×          | 125,042   | 0.6  | · 냉동 뼈 없는 쇠고기(16.9%), 냉장 삼겹살 돼지고기(12.5%), 아보카도(11.3%), 냉동 갈비 쇠고기(8.1%), 냉동 돼지고기(4.1%)           |
| 11        | 브루나이   | 다자         | 0.2       | 0.0  | · 조제품 기타(94.3%), 식물성 액즙과 엑스(5.7%)   |

\*주: 비식품과 수산물(농산물, 축산물, 임산물)의 합계로 수입규모를 집계

\*출처: KATI 농식품수출정보(www.kati.net)

162) 우리나라 농식품 전체 수입액에서 해당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집계

163) 對CPTPP 회원국 농식품 수입액에서 해당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집계

## II 주요내용 분석

### 1. 시장개방<sup>164)</sup>

- 품목 수 기준 우리 농산물의 관세 철폐율은 95% 이상으로 예상되며, 품목별 민감성에 따라 장기철폐가 가능할 전망
  - CPTPP 회원국의 농식품시장 자유화율이 평균 96.3%에 달하며,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의 비중은 평균 81.1%
    - 일본의 경우 일부 농산물(168개 세번)에 대해 공동 쿼터, 국별 쿼터를 설정하고 있으며, 예외적으로 관세 철폐율이 76.2% 수준
    - 국가별 민감성에 따라 최장 21년의 장기철폐 조치가 존재

〈표II-1〉 CPTPP 회원국 농축산업부문 시장 자유화율

(단위: 개, %)

| 국가 | 농축산물 부문 철폐 세번 수 |        |        | 농축산물 전체 세번 수 | 즉시 철폐 품목 비중 | 자유화율  |
|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|
|    | 즉시 철폐           | 단계적 철폐 | 합계(철폐)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|
| 1  | 싱가포르            | 1,284  | 0      | 1,284        | 100.0       | 100.0 |
| 2  | 호주              | 829    | 1      | 830          | 99.9        | 100.0 |
| 3  | 뉴질랜드            | 1,063  | 13     | 1,076        | 98.8        | 100.0 |
| 4  | 브루나이            | 1,261  | 23     | 1,284        | 98.2        | 100.0 |
| 5  | 페루              | 839    | 199    | 1,038        | 80.8        | 100.0 |
| 6  | 말레이시아           | 1,131  | 88     | 1,219        | 91.1        | 99.0  |
| 7  | 베트남             | 339    | 949    | 1,288        | 26.1        | 99.0  |
| 8  | 칠레              | 1,199  | 104    | 1,303        | 86.3        | 96.8  |
| 9  | 멕시코             | 1,017  | 197    | 1,214        | 80.1        | 95.6  |
| 10 | 캐나다             | 1,222  | 124    | 1,346        | 84.6        | 93.2  |
| 11 | 일본              | 891    | 568    | 1,459        | 46.5        | 76.2  |

\*주: 관세가 철폐되는 세번 수를 기준으로 시장 자유화율(%)을 계산, 자유화율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

\*출처: CPTPP 협정문

164)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(2021.10.27.) CPTPP 가입이 확정되지 않아 양허품목 및 관세율이 확정되지 않았으며, 국가별 양허품목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 불가능

- CPTPP 가입을 위해서는 기존 회원국의 승인이 요구되므로, 가입 신청 시 기존 회원국과 동등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

□ 기체결 FTA 양허 제외 품목(민감품목)의 개방 요구 예상

- 민감 품목의 추가 개방이나, 우리측 민감품목 보호를 이유로 기타 품목의 시장개방을 요구할 우려 존재
  - 일본의 경우 쌀 관세를 유지하는 조건으로, 호주산 쌀을 연간 최대 8400톤 무관세로 수입하는 ‘무관세 쿼터’를 허용한 바 있음
- 우리나라의 對CPTPP 주요 수입품목(쇠고기, 돼지고기 등) 중 기체결 FTA 양허 제외 품목의 추가 개방 요구 우려
- RCEP 체결 시 양허 제외로 보호받았던 핵심 민감품목(쌀, 고추, 마늘, 양파, 사과, 배) 추가 개방 요구 우려

〈표II-2〉 對CPTPP 주요 수입품목 중 기체결 FTA 양허제외 품목

| 기체결 FTA                    | FTA 발효일      | 양허제외 품목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|
| 한-칠레 FTA                   | 2004.04.01.  | · 쇠고기(신선·냉장·냉동) (*DDA 이후 논의)<br>· 밀(조분, 펠리트) (*DDA 이후 논의)<br>· 보리(맥주맥, 겉보리, 쌀보리, 기타) (*DDA 이후 논의) |
| 한-싱가포르 FTA                 | 2006.03.02.  | · 돼지고기(냉장·냉동)<br>· 보리(맥주맥, 겉보리, 쌀보리, 기타)<br>· 포도(신선)  |
| 한-아세안 FTA<br>(브루나이, 말레이시아) | 2007.06.01.  | · 돼지고기(냉장·냉동 삼겹살)   |
| 한-페루 FTA                   | 2011.08.01.  | · 쇠고기(신선·냉장·냉동)<br>· 보리(맥주맥, 겉보리, 쌀보리)  |
| 한-호주 FTA                   | 2014.12.12.  | · 돼지고기(냉동 삼겹살, 기타냉동육)<br>· 밀(조분)<br>· 보리(맥주맥, 겉보리, 쌀보리, 기타, 맥아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한-캐나다 FTA                  | 2015.01.01.  | · 포도  |
| 한-뉴질랜드 FTA                 | 2015.12.20.  | · 돼지고기(냉장)<br>· 밀(조분, 펠리트)<br>· 보리(맥주맥, 겉보리, 쌀보리, 기타)<br>· 포도(신선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한-베트남 FTA                  | 2015.12.20.  | · 돼지고기(냉장 삼겹살, 냉장 기타)   |
| RCEP(일본)                   | 2022.01.(예정) | · 쌀, 고추, 마늘, 양파, 사과, 배  |

\*출처: 국가별 FTA 협정문

## □ 멕시코와 신규 FTA 체결 효과가 있을 예정이며, 기체결 FTA 대비 농식품시장 추가 개방이 이루어질 전망

- 멕시코-한국 농산물시장 개방으로 양국 간 교역이 증가할 예정이며, 사전포장식품 라벨링 규정 개정 등 멕시코의 최신 비관세조치에 대한 대응책 마련 시 수출 확대가 가능할 전망
-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는 양자 간 FTA, 한-아세안 FTA, RCEP 등이 기체결된 바 있으나, CPTPP 가입 시 기체결 FTA 대비 더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이 예상
  - 칠레, 말레이시아, 페루, 캐나다, 베트남, 일본의 경우 CPTPP로 농식품시장 개방폭 확대 예상
    - (칠레) 한-칠레 FTA 체결 당시 칠레측 농식품 관세철폐율 71.2%, CPTPP 가입 시 상대측 95% 이상 개방 가능할 것으로 보임
    - (페루) 한-페루 FTA 페루측 농식품 관세철폐율이 92.8%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, CPTPP 체결 이후 페루측 시장개방률 100%에 달할 전망
    - (캐나다) 한-캐나다 FTA 캐나다측 농식품 시장개방률은 85.2%, CPTPP 체결 이후 상대측 90% 이상 개방 가능할 것으로 보임
  - 싱가포르, 브루나이, 호주, 뉴질랜드의 경우 우리나라와의 기체결 FTA에서 농산물시장을 100% 개방한 바 있음(상대측 기준)

## 2. 원산지규정

### □ 원산지 누적기준 도입 및 완전생산 인정 범위 확대로 가공식품의 수출 확대와 중간재 수입 증가 예상

- CPTPP 원산지 누적기준에 따르면 역내산 원재료(협정국간 조달된 원재료)가 모두 국산 재료로 간주되어, 역내산 원재료 활용 제품 수출 시 협정국간 특혜 관세 적용이 가능
  - 그동안 양자간 FTA 체결국(칠레, 캐나다, 페루 등)과 교역할 때, 자국산 원재료를 사용해야 협정 세율 적용이 가능하다는 애로가 존재하였음

01

02

03

04

05

06

07

08

09

10

11

- 원산지 누적기준 적용으로 우리 농식품 가공기업의 수출 여건 개선이 기대
- 역내산 원재료를 활용한 가공무역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
  - 현재 우리나라는 CPTPP 회원국으로부터 쇠고기, 돼지고기, 곡분, 커피, 콜라베이스, 팜유 등 가공식품 제조에 활용 가능한 다양한 원재료를 수입
  - 저렴한 역내산 원재료를 활용할 시 우리 주요 수출품목(조제품 기타, 라면, 설탕과자류 등)의 생산단가 절감이 가능하며, 관세 혜택 역시 적용되어 수출 경쟁력 강화 기대
- 또한, 멕시코, 베트남 등 인건비가 저렴한 역내 국가에 가공공장을 설립할 경우 인건비 절약이 가능하므로 우리 농식품 가공공장의 해외 진출 역시 활성화될 것으로 보임
- 완전생산 인정 범위 확대로 농식품 최종제품의 중간재와 원재료 수입 증가가 예상
  - CPTPP 체결 시 식물 및 식물유래 제품, 동물 및 동물유래 제품의 완전생산 인정 범위가 확대되며, 중간재 및 원재료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
    - **(식물 및 식물유래 제품)** 기체결 FTA는 대부분 ‘역내에서 재배되고 수확된 제품’을 완전생산 제품으로 인정하는 반면, CPTPP는 ‘역내에서 재배, 배양, 수확 또는 수집된 식물과 그 유래 제품’을 완전생산 제품으로 인정
    - **(동물 및 동물유래 제품)** 기체결 FTA는 대부분 ‘역내에서 태어나고 자란 동물’, ‘역내에서 태어나고 온전히 역내에서만 자란 동물’을 완전생산 제품으로 인정하나, CPTPP는 ‘역내에서 태어나고 자란 동물’, ‘역내 동물에서 얻은 물품’ 역시 완전생산 인정 범위

〈표II-3〉 기체결 FTA와 CPTPP의 동·식물 유래 제품 완전생산 인정 범위 비교

| 품목            | CPTPP   | 기체결 FTA   |
|---------------|---|---|
| 식물 및 식물 유래 제품 | · a plant or plant good, grown, cultivated, harvested, picked or gathered there<br>: (해석) 역내에서 재배되거나, 배양되거나, 수확되거나, 수집된 식물이나 식물 제품      | · grown and harvested<br>: (해석) 역내에서 재배되고 수확된 제품<br>· grown and harvested or gathered<br>: (해석) 역내에서 재배되고 수확되었거나 수집된 제품 |
| 동물 및 동물 유래 제품 | · a live animal born and raised there;<br>: (해석) 역내에서 태어나고 자란 동물<br>· a good obtained from a live animal there;<br>: (해석) 역내 동물에서 얻은 물품 | · born and raised<br>: (해석) 역내에서 태어나고 자란 동물<br>· born and entirely raised<br>: (해석) 역내에서 태어나고, 온전히 역내에서만 자란 동물          |

\*출처: CPTPP 협정문, 기체결 FTA 협정문

### 3. 동식물 검역(SPS)

#### □ CPTPP 체결 시 구획화 인정으로 인한 SPS 무역장벽 완화 및 수입국의 검역 의무 강화 예상

- CPTPP의 SPS 규정은 지역화에 구획화 개념을 포함하여, 신선 농축산물의 검역 장벽이 대폭 낮아질 것으로 보임
  - ‘구획화’란 동식물 질병(전염병) 발생 시 수출입 제한 범위를 ‘국가’가 아닌 ‘구획(최소농장단위)’로 완화하는 개념
  - 전염병이 발생한 구획으로부터의 농식품 수입만 제한 가능하므로, 특정 회원국에서 동식물 전염병이 발병해도 수입 허용을 강요받을 수 있음
- SPS 발행과 관련하여 회원국의 의무가 강화됐으며, 지역화 인정 절차와 관련하여 수입국의 의무 강화가 두드러짐
  - 모든 회원국은 신규 SPS 조치를 시행할 시 이를 반드시 통보해야 함
  - 모든 회원국의 SPS 조치는 ①국제기준과 완벽히 일치하거나 ②조치에 대한 과학적·객관적 근거 및 인과관계가 확보되어야 함
  - 수출국이 요청할 경우, 수입국은 지역화 인정 절차에 대해 설명해야 함
  - 특정 회원국을 대상으로 지역화를 불인정할 경우(수입을 거절할 경우), 수입국 측에서 객관적·과학적 근거의 제시가 요구
  - 수출국이 충분한 근거 자료를 제시할 경우, 수입국은 수출국과 자국의 SPS가 동등성을 지님을 인정해야 하며, 불인정 시 객관적·과학적 근거의 제시가 요구

#### □ 최근 5년간 우리나라에서 통보한 SPS 통보문은 총 224건, 이 중 CPTPP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통보문은 24건으로 집계

- CPTPP 회원국을 대상으로 화훼종묘(영춘화속의 뿌리), 종자류, 돈육가공품, 가금류, 난류, 특정 병해충의 숙주가 될 수 있는 식물 등과 관련한 SPS 통보문이 발행

01

02

03

04

05

06

07

08

09

10

11

〈표II-4〉 우리나라 對CPTPP 회원국 SPS 발행건수(2016~2020)

| 통보연도 | 통보건수 | CPTPP 회원국 대상 |   |
|------|------|--------------|---|
|      |      | 통보건수         | 품목(해당국가)  |
| 합계   | 224  | 24           | · 하기참조  |
| 2020 | 42   | 2            | · 영춘화속의 부리 (캐나다, 멕시코, 브루나이, 말레이시아, 싱가포르, 호주)<br>· Erwinia amylovora의 숙주인 Pomoideae, Prunus genus, Rubus genus속 식물의 수분용 꽃가루 (캐나다, 멕시코, 뉴질랜드)   |
| 2019 | 55   | 3            | · Rutaceae, Cuscuta spp, Artocarpus heterophyllus에 속하는 묘목 및 식재용 식물 (종자 제외) (멕시코)<br>· 돈육가공품 (베트남)<br>· 영춘화속의 부리 (캐나다, 멕시코, 브루나이, 말레이시아, 싱가포르, 호주, 뉴질랜드)   |
| 2018 | 47   | 5            | · 영춘화속의 부리 (캐나다, 멕시코, 브루나이, 말레이시아, 싱가포르, 호주)  |
| 2017 | 38   | 2            | · 감자, 토마토, 아보카도, 고구마, 고추, 달리아, 가지, 골든베리, 까마중, 페피노, Solanum laxum, Solanum pseudocasicum, Cestrum nocturnum, Lycianthes rantonnetii, Streptosolen jamesonii, Brugmansia suaveolens의 파종용 종자와 신선한 줄기 (칠레, 멕시코, 페루, 일본, 호주, 뉴질랜드)<br>· 영춘화속의 부리 (캐나다, 멕시코, 브루나이, 말레이시아, 싱가포르, 호주) |
| 2016 | 42   | 12           | · Xylella fastidiosa의 숙주인 식재용 식물 (캐나다, 멕시코)<br>· 영춘화속의 부리 (캐나다, 멕시코, 브루나이, 말레이시아, 싱가포르, 호주)<br>· 가금류 (호주, 캐나다, 일본, 뉴질랜드)<br>· 가금류 외 조류 (호주, 캐나다, 일본, 뉴질랜드)<br>· 초생추 가금류 (호주, 캐나다, 일본, 뉴질랜드)<br>· 가금류의 종란 (호주, 캐나다, 일본, 뉴질랜드)  |

\*출처: SPS IMS - World Trade Organization(spsims.wto.org)

□ 최근 5년간 CPTPP 11개국에서 SPS 통보문은 총 2,388건으로, 이 중 한국 농식품을 대상으로 발행된 건은 8건으로 집계

- 한국산 농식품에 SPS를 발행한 회원국은 캐나다(2건), 페루(1건), 칠레(1건), 호주(2건), 멕시코(1건), 뉴질랜드(1건)로 총 6개국
  - (캐나다) ‘동물질병’, ‘동물건강’, ‘아프리카돼지열병(ASF)’을 사유로 2020년, 2019년 한국산 곡류에 SPS 발행
  - (페루) 2017년 ‘식물건강’을 사유로 한국산 토마토(신선)에 SPS 발행
  - (칠레) ‘해충’, ‘식물건강’ 등을 사유로 2020년 한국산 감(신선)에 SPS 발행
  - (호주) ‘해충’ 및 ‘식물건강’ 사유로 2017년, 2016년에 한국산 딸기(신선)에 SPS를 통보한 바 있음

- (멕시코) 2019년 ‘해충’, ‘식물질병’ 이유로 한국산 버섯(신선)에 SPS 발행
- (뉴질랜드) 2020년 ‘해충’, ‘식물건강’을 사유로 한국산 포도에 SPS 통보

〈표II-5〉 CPTPP 회원국 국가별 SPS 발행건수(2016~2020)

| 통보국가  | 통보건수<br>(5년 누계) | 한국 대상 |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|--|
|       |                 | 발행건수  | 품목 및 사유  |
| 전체    | 2,388           | 8     | · 하기참조   |
| 캐나다   | 700             | 2     | · (2020) 곡류(부순 것 포함) - 동물질병, 동물건강, ASF<br>· (2019) 곡류(부순 것 포함) - 동물질병, 동물건강, ASF |
| 일본    | 522             | -     | -  |
| 페루    | 331             | 1     | · (2017) 신선 토마토 - 식물건강   |
| 칠레    | 229             | 1     | · (2020) 신선 감 - 해충, 식물건강, 영토보호   |
| 호주    | 222             | 2     | · (2017) 신선 딸기 - 해충, 식물건강<br>· (2016) 신선 딸기 - 해충, 식물건강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멕시코   | 154             | 1     | · (2019) 신선 버섯 - 인간 건강, 해충, 식물질병, 식물건강, 영토보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뉴질랜드  | 151             | 1     | · (2020) 포도 - 해충, 식물건강   |
| 베트남   | 50              | -     | -  |
| 싱가포르  | 19              | -     | -  |
| 말레이시아 | 10              | -     | -  |
| 브루나이  | -               | -     | -  |

\*출처: SPS IMS - World Trade Organization(spsims.wto.org)

- CPTPP 체결을 통해 SPS 장벽의 완화가 예상되며, 이로 인한 양방향 농식품시장 개방 기대
  - 우리나라는 현재(2021.10.) 해충, 식물 건강을 사유로 일부 신선농산물<sup>165)</sup> 품목의 수입을 제한하는 비관세조치를 시행 중이며, CPTPP 가입 시 ①해당 조치에 대한 과학적 근거 제시 ②시장개방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
    - 우리나라는 해충, 식물 건강을 사유로 사과, 배, 복숭아, 단감, 자두 등 신선농산물의 수입을 제한 중
  - CPTPP측 시장개방 역시 이루어질 것이므로, 개별농장 위생 관리 강화를 통해 동·식물 전염병(AI, ASF 등)으로 인한 신선 농축산물 수출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

165) 사과, 배, 복숭아, 단감, 자두 등

01  
02  
03  
04  
05  
06  
07  
08  
09  
10  
11

## 4. 무역기술장벽(TBT)

- CPTPP는 무역기술장벽을 별도의 챕터로 규정하며, 적합성과 투명성과 관련한 회원국의 의무 강화
  - **(적합성)** 회원국별 적합성 평가기관이 상호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
    - CPTPP 협정문 Article 8.6의 제1번 조항에 따르면, 각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적합성 평가기관을 자국의 적합성 평가기관과 동일하게 대우해야 함
  - **(투명성)** 모든 유형의 통보문(신규, 추가, 정정, 개정 등)에 대한 통보 의무가 강화
    - 협정문 Article 8.7의 제4번 조항에 따르면, 모든 회원국은 중앙정부기관의 통보문(기존 신규, 추가, 정정, 개정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)에 대해 모든 내용과 개정 내용을 게시해야 함
    - 협정문 Article 8.7의 제6번 조항에 따르면 모든 회원국은 전자적 수단을 통해 공식 웹사이트에 신규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모든 정보를 게시해야 함
  
- CPTPP 협정문은 와인과 증류주, 포장식품 및 식품첨가물, 유기농 제품의 기술규정과 관련하여 개별 부속서 발행

|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와인과 증류주<br>(ANNEX 8-A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<b>필수요건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각 회원국은 와인 및 증류주에 대한 자국의 법률과 규정 정보를 공개해야 함</li> </ul> </li> <li>· <b>와인과 증류주 제품의 라벨링 요건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라벨은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아야 하고, 쉽게 읽을 수 있어야 하며 제품 표면에 단단히 부착되어야 함</li> <li>- 회원국이 제품명, 원산지, 순함량, 도수 외의 정보를 라벨에 표기하도록 요구할 경우, 상품 공급자는 해당 정보를 부착되는 라벨에 표기해야 함</li> <li>- 회원국간 ①생산·가공일자(date of production or manufacture) ②유통기한(date of expiration) ③최소 품질유지 기한·날짜(date of minimum durability) ④판매기한(sell by date)의 정보 표기를 강제할 수 없음</li> <li>- 와인의 제조공정에 대해 'chateau, classic, clos, cream, crusted/crusting, fine, late bottled vintage, noble, reserve, ruby, special reserve, solera, superior, sur lie, tawny, vintage' 등 문구를 포함하였다는 이유로 회원국간 제품 수입을 금지할 수 없음</li> </ul> </li> </ul>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포장식품 및 식품첨가물 (ANNEX 8-F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<b>상품 전매 제조법(Proprietary Formulas)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전매 제조법과 관련한 상품 정보의 경우 (합법적 목적달성을 위한) 정보수집이 필수적이며, 정보의 기밀이 보장되어야 함</li> </ul> </li> </ul>   |
| 유기농 제품 (ANNEX 8-G)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<b>유기농 제품과 회원국간 협력에 관한 지침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유기농 생산, 유기농 제품, 관리시스템과 관련하여 회원국간 정보의 교환을 장려</li> <li>- 거래와 관련된 국제지침, 표준, 권장사항 등을 개발 및 개선하기 위해 회원국간 협력이 장려</li> <li>- 우리나라의 경우 「친환경농어업법」에 의거, 유기농식품의 상호동등성 협정을 맺을 수 있음</li> </ul> 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※ 권고사항으로 이행이 강제되지 않음</p> |

#### □ 회원국간 적합성 평가기관 상호인정, 투명성 강화로 무역기술장벽 완화 기대

- 적합성 평가기관 상호인정, 투명성 강화, 특정 품목의 기술규정 통일로 무역기술장벽 완화가 예상되며, 특히 개도국 기술장벽 완화 기대
- CPTPP 협정문에서 규정한 일부 품목의 기술요건과 국내 규정의 차이를 사전에 파악하는 등 대비 필요

01

02

03

04

05

06

07

08

09

10

11

### Ⅲ 시사점

- CPTPP는 기체결 FTA 대비 높은 농식품시장 자유화율을 보유함에 따라, 사전 대응방안의 수립 필요
  - 회원국의 평균 농식품 시장 자유화율은 96.3%로, 기체결 FTA 대비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이 이루어질 예정
  - 협정 가입을 대가로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, 민감품목의 방어를 위한 전략 수립 필요
    - CPTPP는 회원국이 가입 신청국을 승인하는 형태로 신규 회원국의 가입이 이루어지므로, 가입 신청 시 기존 회원국과 동등하거나, 더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<sup>166)</sup>
    - 기체결 FTA에서 양허 제외 품목으로 선정한 바 있는 품목<sup>167)</sup>의 추가 개방 요구가 우려, 민감품목의 방어를 위한 사전 전략 수립 필요
  
- 원산지 누적기준 도입으로 가공무역 활성화 및 중간재(원재료) 수입의 증가 예상
  - CPTPP 가입 시 역내산 원재료로 제조한 제품 역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, 우리 농식품 주요 수출품목인 가공식품(기타조제품, 라면, 설탕과자 등)의 가격경쟁력 강화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나, 원재료 및 중간재의 수입 증가 예상
  - 또한, 멕시코, 베트남 등 인건비가 저렴한 회원국으로의 농식품 가공공장 진출 전망
  
- 구획화 인정으로 동식물 검역장벽(SPS)이 대폭 완화될 예정, 신선 농축산물의 수출입 증가 예상
  - 동식물 전염병으로 인한 수입 제한 범위가 국가가 아닌 지역, 농장 등 구획으로 축소되었으며, 우리나라에서 해충을 사유로 수입을 제한 중인 품목(사과, 배, 복숭아, 단감, 자두 등)의 시장개방이 요구될 것으로 보임

166) 11개 회원국의 농식품 관세철폐율은 평균 96.3%, CPTPP 발효 즉시 관세철폐 품목의 비중은 평균 81.1% 수준

167) RCEP의 초민감품목(쌀, 고추, 마늘, 양파, 사과 배), 기체결 양자간 FTA의 주요 양허품목인 쇠고기, 돼지고기 등

- 검역과 관련한 수입국의 의무가 강화되어 우리나라 검역 역량 제고를 위한 검역 전문인력, 설비의 보충 필요
  - 한편, 동·식물 전염병으로 인한 신선 농축산물 수출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, 원활한 수출을 위해 개별농장의 위생 관리 강화 요구
    - CPTPP의 검역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개별농장의 위생관리 매뉴얼 수립 등을 고려 가능
- 무역기술장벽 완화로 개도국 수출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
- 투명성 강화, 특정 품목(와인과 증류주, 포장식품 및 식품첨가물)의 통일 기술규범 공시로 회원국간 무역기술장벽이 완화될 예정
  -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됨에 따라 수출기업의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, 특히 무역기술장벽에 의존도가 높은 개도국으로의 수출 애로 해소 기대
- 시장개방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신선 농축산물 보호 전략의 수립이 요구
- 장기철폐, 저율할당관세(TRQ)<sup>168)</sup>, 특정국 개별양허 등 품목별 민감도를 고려하여 양허유형을 선택
  - 민감품목에 대한 추가 시장개방이 요구될 경우에 대비하여 사전 협상전략을 강구해야 함
    - 필요에 따라 공산품을 레버리지로 농산품을 보호하는 등의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는 전문가 의견 존재
- CPTPP 체결 시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는 가공식품의 경우, 수출 확대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 분석
- 글로벌 공급망 개선으로 원재료 조달을 원활하게 하는 등 가공무역의 기반 강화 필요
  - 회원국으로부터 낮은 가격에 원재료를 수입하여 제품을 생산할 시, 가격경쟁력 강화 및 우리 농식품 수출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

168) 양허된 시장접근물량에 대해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,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

- 이 외에도, CPTPP는 협정문에 국영기업에 대한 독립 규범을 보유하므로(제17장 해당되는 정부기관의 각별한 주의 필요<sup>169)</sup>)
- CPTPP 협정문 제17장에서는 국영기업을 ‘상업적 활동\*에 주로 종사하는 기업’으로, 아래 세 가지 유형으로 정의
    - \* 상업적 활동(Commercial activities) - 이윤 창출에 집중하고 동 기업이 특정 시장에서 자신이 결정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상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경우
    - (소유지분 기준) 정부가 자본의 50% 이상을 직접 소유
    - (의결권 기준) 정부가 소유 지분을 통해 50% 이상의 의결권 행사를 통제
    - (기업 경영에 대한 관리·감독) 정부가 이사회 의원, 그 밖에 이에 상응하는 경영진의 다수를 임명할 권한 보유
  - CPTPP 제17장의 국영기업에 해당할 경우,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①비상업적 지원 ②비차별 대우 위반 등에 유의해야 하며, 투명성 요구사항에 대한 협정상 요구사항 대응을 준비해야 함

169) 우리나라는 다수의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설립 및 운영되어, CPTPP 가입 시 국영기업의 규정에 대한 논의가 특히 중요하게 작용

## ◎ 참고문헌 및 참고사이트

|    |  |
|----|--|
| 1  | 글로벌 통계정보원 ITC Trademap(www.trademap.org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  | 세계은행 데이터베이스 World Bank Data(data.worldbank.org)                        |
| 3  | 뉴질랜드 외교통상부(www.mfat.govt.nz)   |
| 4  | 세계 인구정보데이터베이스 World Population Review(worldpopulationreview.com)       |
| 5  | SPS IMS -World Trade Organization(spsims.wto.org)                      |
| 6  | CPTPP 발효와 농업통상 분야 시사점,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(2018.12.28.)                     |
| 7  | CPTPP의 미래와 우리의 대응방안(KIET 산업경제 2021년 1월호), 산업연구원(2021.01.)              |
| 8  | RCEP 서명에 따른 CPTPP와의 협정문 주요 내용 비교 분석,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김희중(2021.01.25.)      |
| 9  | CPTPP 발효에 따른 국가별 반응 및 영향, KOTRA(2018.12.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0 | 2021년 한국 농업·농촌을 뜨겁게 달굴 다섯 가지 위협과 기회, GS&J institute 서진교 외 8인(2021.01.) |
| 11 | [통상리포트] CPTPP 타결 의미와 시사점,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, 이요셉(2018.03.20.)               |
| 12 | 농식품 수출을 위한 RCEP 협정 활용 매뉴얼, 농림축산식품부(2021.05.06.)                        |
| 13 | 정부 CPTPP 가입 결정 임박...공급망 강화·디지털 통상 기대감, 뉴시스(2021.10.19.)                |
| 14 | "CPTPP 가입 여부 이달말 결정", 한경닷컴(2021.10.18.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5 | [생생경제] 한국 CPTPP 가입, 득보다 실이 더 큰 이유, YTN(2021.09.17.)                    |
| 16 | 정부 '메가 FTA' CPTPP 가입 내주 결정, 서울신문(2021.10.19.)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7 | 중국 'CPTPP 가입' 신청했지만... 미국 동맹 견제 등 난제 산적, 한국무역협회(2021.09.17.)           |
| 18 | 서진교 "CPTPP 가입 의사...아태협력에 세계 미래 걸려"(종합2보), 연합뉴스(2020.11.20.)            |
| 19 | 하나의 중국 中 보란듯...대만도 CPTPP 가입 신청서 제출, 서울경제(2021.09.22.)                  |
| 20 | CPTPP 가입 가닥...벼랑 끝 한국농업, 농민신문(2021.10.22.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1 | CPTPP서 일본 '쌀 8400톤 무관세 쿼터' 개방...가입 땀 국내 쌀 시장도 위협, 한국농어민신문(2021.01.15.) |
| 22 | 임기말 文정부, CPTPP 가입 속도 내겠다는데...4가지 관전 포인트, 조선비즈(2021.10.25.)             |
| 23 | CPTPP 대비하는 농식품부, 농업 영향 점검 나서, 서울경제(2021.03.12.)                        |
| 24 | 긴급진단 CPTPP 가입검토, 농업이 '반대한다', 농업인신문(2021.05.15.)                        |
| 25 | [2022 대선 ④] "메가 FTA...수입 저지 넘어 해외시장 개척을", 농민신문(2021.09.24.)            |
| 26 | CPTPP 가입 신청, 빠를수록 좋다, 중앙시평(2021.04.16.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7 | CPTPP 우리농업 영향은? 농축산물 수입 늘어 경쟁력 약화우려, 농민신문(2019.01.09.)                 |
| 28 | 매년 3,000건씩 쌓이는 무역기술장벽...한국 수출길 '위태', 서울경제(2021.03.21.)                 |

01

02

03

04

05

06

07

08

09

10

11